

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의 참여 제한기준(제9조의6 관련)

기준연도	연간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금액 규모
1년차	기준금액의 100분의 75
2년차	기준금액의 100분의 50
3년차	기준금액의 100분의 25

비고

1. "기준연도"란 종전의 연차(1년차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날까지를 말한다.
2. "기준금액"이란 해당 중견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까지 연속하여 3년간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여 공공기관에 경쟁제품을 납품한 금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